

# 정관

2025년 3월

주식회사 제주항공

제 정 : 2004 년 12 월 28 일  
제 1 차 개정 : 2005 년 05 월 17 일  
제 2 차 개정 : 2005 년 09 월 06 일  
제 3 차 개정 : 2006 년 01 월 19 일  
제 4 차 개정 : 2006 년 03 월 10 일  
제 5 차 개정 : 2010 년 03 월 25 일  
제 6 차 개정 : 2011 년 03 월 25 일  
제 7 차 개정 : 2012 년 03 월 12 일  
제 8 차 개정 : 2014 년 03 월 20 일  
제 9 차 개정 : 2015 년 03 월 26 일  
제 10 차 개정 : 2015 년 09 월 23 일  
제 11 차 개정 : 2016 년 03 월 28 일  
제 12 차 개정 : 2017 년 03 월 29 일  
제 13 차 개정 : 2018 년 03 월 28 일  
제 14 차 개정 : 2019 년 03 월 27 일  
제 15 차 개정 : 2021 년 03 월 30 일  
제 16 차 개정 : 2021 년 08 월 13 일  
제 17 차 개정 : 2024 년 03 월 28 일  
제 18 차 개정 : 2025 년 03 월 26 일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상호)

- ① 본 회사는 주식회사 제주항공(이하 회사라 한다.)이라 칭한다.
- ② 영문으로는 JEJUAIR, CO., LTD.로 표기한다.

###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내외항공운송업
2. 항공기 취급업
3. 항공기 사용사업
4. 항공기 및 기기류 재생사업
5. 기내식 제조 판매 및 기내용품 판매업
6. 항공기내 면세물품 판매업
7. 임대업(항공기, 부동산, 운수장비, 운수부대장비 및 전산통신장비 등)
8. 항공관련 의료업
9. 운송대리점업
10. 관광사업
11. 신용판매업
12. 여행상품 판매업
13. 면세물품 및 토산품 판매업
14. 통신판매업
15. 상품판매업
16. 리무진버스사업
17. 문화사업
18. 복합운송주선업
19. 항공기를 이용한 자원조사 및 각종 기술용역업
20. 항공에 관련되는 위탁업 및 대리업
21. 종합관광업 및 운동시설 운영업
22. 통관업
23. 각종接客 서비스업
24. 관광편의 시설업
25. 농수산물의 가공 및 판매업
26. 유람선 운항사업
27. 물품 포장업
28. 준비된 식사와 면세품과 관련 용역을 항공기에 공급하고 인도하는 행위

29. 공항식당 및 관련 시설을 영위하는 행위
30. 공중을 위한 일반급식(케이타링)업을 영위하는 행위
31. 전자상거래업
32. e-business업
33. 벤처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34. 항공기 정비업
35. 일반창고업
36. 교육사업
37. 사업지원서비스업
38. 식품유통업
39. 보험대리점업
40. 호텔업
41. 항공화물하역업
42. 항공용 기기의 제조 및 수리업
43. 세탁업
44. 일반여행업
45. 관광호텔업 및 관광숙박업
46. 지상조업
47. 항공기 지상조업용 장비제작, 정비 및 점검업
48. 크루즈운영 및 부대되는 사업
49. 광고업, 광고대행업, 광고물 제작업
50. 상품권 매매업
51. 일반음식점
52. 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 제 3 조 (본점, 지점 및 영업소)

-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제주시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및 영업소,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 4 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air.net/>)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에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헤럴드경제신문 및 제주도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타임스)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식

제 5 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익주로 한다.

제 6 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삼백만주로 한다.

제 7 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발행할 주식의 종류)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1,000만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 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 분을 다음 사업 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결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 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인수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부여하는 방식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4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 일부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4년 내에 행사 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행한 경우

#### 제 10 조의 3(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 제 12조 - 삭제(2019.03.27)

#### 제 12조의 2(전자주주명부)

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 할 수 있다

#### 제 13조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사채

#### 제 14 조 (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 할 수 있다

#### 제 14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의 발행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의 익일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 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주총회

### 제 17 조 (소집시기)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눈다.
- ②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 18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6조를 준용한다.

### 제 19 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에서 발행하는 헤럴드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 20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국내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 21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36조를 준용한다.

### 제 22 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6 조 - 삭제(2016.03.28)

제 27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제 29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는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5 장 이사, 이사회

### 제 1 절 이사

제 30 조 (이사의 수)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내로 한다
- ②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③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31 조 (이사의 선임)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 ③ 본 회사는 상법 제382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 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 33 조 (이사의 보선)

- ①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4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5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6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7조 (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7 조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겸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2 절 이사회

제 38 조(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개최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 39 조 - 삭제(2014.03.20)

제 40 조 - 삭제(2017.03.29)

제 41 조(이사회 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 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 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42 조(이사회 의 의사록)

① 이사회 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3 조 (위원회)

① 이사회 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경영위원회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 제41조,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4 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5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⑦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업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6 조 - 삭제

#### 제 47 조 - 삭제

#### 제 48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 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제 49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50 조 - 삭제

### 제 7 장 회계

#### 제 51 조(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년 1회 결산한다.

#### 제 52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의일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3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본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4 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 55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5조의2 (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 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 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제 56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최초의 사업연도)

이 회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3 조 (세칙내규)

이 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 제 4 조 (규정 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 부 칙 (2005. 05. 17)

### 제 1 조

본 개정정관은 2005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5. 09. 06)

### 제 1 조

본 개정정관은 2005년 09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01. 19)

### 제 1 조

본 개정정관은 2006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03. 10)

### 제 1 조

본 개정정관은 2006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 03. 25)

### 제 1 조

본 개정정관은 2010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3. 25)**

제 1 조

본 개정정관은 2011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3. 12)**

제 1 조

본 개정정관은 2012년 0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0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3. 20)**

제 1 조

본 개정정관은 2014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제3항의 단서, 제7항, 제10조의 2의 제1항의 단서, 제14조의2 제7항, 제15조 제7항, 제19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제33조 제3항은 본 회사가 상장법인이 된 후에 시행한다.

**부 칙 (2015. 03. 26)**

제 1 조

본 개정정관은 2015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제3항의 단서, 제7항, 제10조의 2의 제1항의 단서, 제19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3조 제2항은 본 회사가 상장법인이 된 후에 시행한다.

**부 칙 (2015. 09. 23)**

제 1 조

본 개정정관은 2015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제3항의 단서, 제7항, 제10조의 2의 제1항의 단서는 본 회사가 상장법인이 된 후에 시행한다.

**부 칙 (2016. 03. 28)**

제 1 조

본 개정정관은 2016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3. 29)**

제 1 조

본 개정정관은 2017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3. 28)

제 1 조

본 개정정관은 2018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3. 27)

제 1 조

본 개정정관은 2019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30)

제 1 조

본 개정정관은 2021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8. 13)

제 1 조

본 개정정관은 2021년 0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3. 28)

제 1 조

본 개정정관은 2024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3. 26)

제 1 조

본 개정정관은 2025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